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04
----------	-------

발의연월일 : 2026. 7. 2.

발 의 자 : 김문수 · 민홍철 · 송재봉
양부남 · 민병덕 · 김현정
허성무 · 주철현 · 정진욱
조계원 · 이광희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로 지역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인적자원이 취약해지고 수도권에서는 주거비와 생활비 증가, 과다경쟁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청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고, 지역청년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 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라.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과 지역의 주도에 의한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감소지역”이란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소멸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우려가 있는 인구 50만명 미만의 비수도권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역청년”이란 청년감소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청년감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청년을 말한다.
4. “지역청년특구”란 청년감소지역으로의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청년과 해당 청년감소지역이 공동으로 주거·문화시설·네트워크 등을 복합하여 기획·설계한 청년친화 복합공간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지역청년특구사업”이란 제11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조성계획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역청년특구의 조성·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청년이 참여하여 지역청년특구를 기획·설계 및 운영하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소멸 방지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과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를 희망하거나 이주한 청년들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하여 성과를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청년특구 운영 추진체계

제5조(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 ①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정책을 기획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협력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추진상황에 따른 보완 및 추가지원 사항의 검토
3.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조와 지원
5. 그 밖에 청년의 지역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사항

③ 추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특별시, 통합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과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위원 중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추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실무위원회·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의 관할 시장, 군수 및구청장 및 청년단체의 대표자와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등을 위원으로 하여 지역청년특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
2. 제11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의 수립
3.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과 관련된 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과 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위하여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유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다.

제3장 지역청년특구 관련 계획과 지역청년특구의 지정

제9조(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청년특구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청년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청년특구의 기획·설계 및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지역청년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성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략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추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전략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전략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역청년특구의 운영을 포함한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에 관한 연도별 지역청년특구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운영계획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시·군·자치구협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그 밖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역청년특구의 신청 및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청년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역청년특구 지정의 필요성
3.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내용 및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4. 제14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의 구성(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를 구성하여 등록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재원 조달방법
6. 제15조에 따른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의 설립계획 및 운영 방안(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을 설립한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 조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포함된 지역청년특구의 경우 관보에 지정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지역청년특구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변경지정”으로 본다.

⑧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의 지정·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역청년특구의 지정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변경지정된 지역청년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역청년특구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역청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이 포함된 지역청년특구의 경우 관보에 지정해제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시행 등

제13조(사업시행자) ①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청년특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조성계획에 따라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사업시행자의 신청·지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의 설립) ① 지역청년은 지역자원의 연계·활용을 통하여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의 운영 및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3.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의 목적, 구성 또는 운영 형태가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지역청년특구사업협의체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의 설치) ① 지역청년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지역청년특구운영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청년특구에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의3에 따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또는 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을 재단으로 보고 재단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지역청년특구 사업의 지원
3. 지역청년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4. 지역청년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지역청년특구 내 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6. 지역청년 지원에 관한 법·제도 수립방안 연구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지역청년특구에 대한 지원 등

제1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청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자연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초지법」,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원인자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대체초지조성비,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사업에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구거(도랑)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은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리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도지사는 지역청년특구 내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지역청년특구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지역청년특구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국유재산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 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친 재산으로 한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역청년특구사업을 목적으로 우선 처분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평가는 지역청년특구로 지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지역청년특구 내의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지역청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상가임대차 계약에 관한 특례) 지역청년특구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체결한 상생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하지 못한다.

제21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지역청년특구 안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른 영업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지역청년특구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공지(空地)를 사용하여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 또는 노면전차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청년지원기금 설치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청년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 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과 기부금 및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지역청년의 유입 및 정착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23조(지역청년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역청년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청년특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2.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3.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24조(전문지원기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청년 유입 및 정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문제와 지역활력 회복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지역청년 유입·정착 전문지원기관(이하 “전문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지원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지원기관의 장에게 지원내역 등 지역청년 유입·정착 지원 업무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문지원기관의 선정 유효기간, 선정취소,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